

보험약관조항의 무효를 선고한 대법원판결과 보험자의 대응*

- 자동차자기신체사고보험을 중심으로 -

양 승 규**

<차례>

- I. 문제의 제기
- II.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
- III. 무면허,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와 보험약관
- IV.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보험금감액 조항의 효력
- V. 맺는 말

주제어 : 보험계약법,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띠, 보험약관, 보험자의 면책

<국문초록>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면책사유로 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결은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을 무효(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7591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8다4330 판결)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은 “상법 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고발생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음주운전자나 안전띠를

* 본 논문은 사)한국보험법학회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에서 개최한 201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완한 것입니다.

** 서울대법대 명예교수

- 논문접수일(2016.12.11), 심사개시일(2016.12.23), 게재확정일(2016.12.26)

매지 아니한 운전자나 피보험자를 보호한다는 알팍한 생각으로 보험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조항을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을 부인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법원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고 보험사거나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감독원은 피보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¹⁾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다. 보험감독당국이 잘못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사업자에게 그 약관을 개정하거나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감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보험사업자는 잘못된 판례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부당한 감독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 문제의 제기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인수할 개별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통거래약관이다(보업 5조3호).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단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위험을 전가하고 분산하여¹⁾ 공동의 힘으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개별적인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그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에게 그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 된다(상 638조).

이러한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특성상 단체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²⁾. 따라서 보험약관은 보험상품에 관한 개별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험에 든 위험의 개별적인 차이(individuelle Unterschiede des konkret versicherten Risikos)를 고려함이 없이 동질적인 위험에 관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계약조항이라는 데 특성이 있다³⁾.

1) Robert E. Keeton, Alan I. Widiss, *Insurance Law*, 1988, p.3,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11ed. 2008, p. 8. 1-011.

2) 양승규, 「보험법」 제5판, 2004, 삼지원, 84쪽.

3) 양승규, 「보험법의 법리」, 삼지원, 2000, 22쪽, Wolf/Horn/Lindacher, *AGB-Gesetz Kommentar*, 1984, S.1037.

보험약관은 보험제도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상품의 거래약관과는 달라 그 구속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다름이 있고, 의사설과 규범설로 크게 나누어진다.⁴⁾ 다만 보험약관의 규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보험계약법의 규정에 어긋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정하였다면 그 조항은 무효로 되고(상 663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는 그 약관의 조항을 들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보험의 원리상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해석을 그릇쳐 무효로 선고한 경우 보험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대법원판결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해 보험약관이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의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조항의 무효를 선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해보험이나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면책약관을 없애고 보험 보호를 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행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액에서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한다(1항5호2)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것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조건을 규정한 것이지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이해할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⁵⁾은 위의 감액조항을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도로에 설치된 화단을 충격하여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안전띠 미착용시 보험금감액지급약관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감액된 보험금 600만원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금융분쟁조정위는 보험사에 대해 감액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였다⁶⁾고 한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위의 대법원판결은 보험계약의 법리로 볼 때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이른바 보험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보험질서를 바로 세워

4) 양승규, 「보험법」 제5판, 2004, 68쪽 이하 참조.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은 규범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판례공보 2014.10.15. 제452호, 1995쪽.

6) 정찬목, “자동차종합보험 관련 최근분쟁조정사례”, 「손해보험」 2015. 04, 85쪽 참조.

야 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가 대법원판결이 보험금감액을 규정한 약관의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미 보험금지급이 끝나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소급하여 추가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⁷⁾

이러한 점에서 도로교통의 안전과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운전자나 피보험자를 보호한다는 알팍한 생각으로 보험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조항을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다. 이는 오히려 법원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고 보험사거나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보험감독당국이나 보험사업자는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II.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라 하고, 이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책임면제사유(exceptions)와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에서 위험을 담보하지 아니한 담보위험제외사유(exclusions)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 담보위험제외사유도 일반적으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가 책임면제사유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담보위험제외사유에 해당하느냐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 이해의 편의를 찾아보기로 한다.

7) 안전띠미착용에 관한 2014년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 2013년도에 안전벨트미착용으로 인하여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수가 1,260명,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보험 포함)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전체 피보험자수가 134,09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Edwin W. Patterson, *Essentials of Insurance Law*, 2d. 1957, pp. 248-249.

1. 책임면제사유

상법 제659조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보험사고의 원인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도덕적 위험이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면책사유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의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노린 것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일부러 그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하고, 일부러 일으킨 사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고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보험제도의 성질상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해보험의 경우에 준용된다(상 739조). 그러므로 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피보험자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가령 자동차가 질주하는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와 같이 현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모한 행위를 한 경우는 적어도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만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중대한 과실을 제외해도 큰 물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원인이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된 사유(excepted causes)로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그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밝힌 상법 제66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약관의 효력이 없음은 당연한 법리이다.

9)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142쪽.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6351 판결은 이를 뚜렷이 하고 있다.

2. 담보위험제외사유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위험을 원인으로 생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령 화재보험자가 화재의 위험을 인수한 건물의 손실이 지하의 합몰이나 풍수해로 붕괴되어 전손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담보하지 아니한 화재보험자는 그 보험의 목적이 사라져 보험계약은 종료되거나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의 손상(injury)을 입은 경우 그 질병이 불의의 사고(accidental event)로 생긴 것이 아닌 한¹⁰⁾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거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보험자는 보험약관에서 보상책임을 지는 사고와 보상하지 않는 사고를 정해 둔다. 후자가 바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이고,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제외사유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의 담보위험제외사유 가운데 세 가지만 들어보기로 한다.

1.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2.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사태에 기인한 손해.

이러한 담보위험배제사유로서의 면책사유는 보험자가 처음부터 위험을 담보하지 아니한 위험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신체의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고,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약관조항을 무효로 돌릴 수도 없다. 가령 피보험자가 마약을 먹고 환각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동차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것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다.

10) MacGillivray, *op.cit.* p.780. 25-001 참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보험보상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담보위험제외사유, 담보조건 또는 책임의 한도 등을 보험약관에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¹¹⁾ 그러므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보험계약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냐, 아니면 그 보험의 성질상 보험자가 담보위험에서 제외하여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속하느냐를 신중히 가려야 한다. 피보험자의 상해원인이 된 행위가 위법 부당하거나 약관에서 제외한 사고(excluded events), 기령 피보험자동차를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상해 자체에 피보험자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732조의2의 규정에 어긋나 그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담보위험제외사유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이는 보험법리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Ⅲ. 무면허,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인한 상해와 보험약관

1. 무면허, 음주운전의 위법성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도교법 제43조, 제44조1항). 무면허운전은 그 차량을 운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소정의 운전면허를 가지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도교법 제44조 4항)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어느 것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도교법 제152조1호, 제154조2호, 제148조1항,2항).

이에 따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에 위해를 가하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사회질서에도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행위(criminal acts)에 속한다.

11) Keeton/Widiss, *op.cit.*, p. 286.

<표 1> 무면허/음주운전교통사고 현황(2014년)¹²⁾

구 분	발 생 건 수		사 망 자		부 상 자	
	(건)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전 체	223,522	100.0	4,762	100.0	337,497	100.0
무면허운전	7,435	3.3	305	6.4	10,682	3.2
음주운전	20,043	9.0	592	12.4	42,772	12.7

자료: 교통사고통계(경찰청, 2014) 12월말 기준

2. 무면허, 음주운전사고와 보험담보

무면허,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고, 보험사고가 범죄행위의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보험자의 담보위험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험법리라 할 수 있다.¹³⁾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술에 취한 피보험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bodily and mental faculties)을 정상적으로 가누기가 쉽지 않아(lost the normal control)¹⁴⁾ 비록 교통사고의 발생에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는 있다.¹⁵⁾ 이에 따라 각 나라의 보험약관이나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약관, 상해보험약관 등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보험법리상 당연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도 한 해에 무면허운전사고 7,435건으로 305명의 사망자와 10,682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0,043건, 사망자 592명, 부상자 42,772명에 이르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의 현주소를 알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¹⁶⁾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무면허운전자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12) 손해보험협회, 한국의 손해보험 2015, 75쪽 참조

13) Keeton/Widiss, *op.cit.*, pp. 508-510, MacGillivray, *op.cit.* p. 813, 25-060 참조. 독일자동차보험약관(AKB) 제19조2항 3b)는 범죄행위(Straftat)를 담보위험제외사유로 규정하여 고의적인 무면허, 음주운전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Bauer, *Die Kraftfahrtversicherung*, 3 Aufl., 1993, SS. 234, 237.)

14) Malcolm Clarke, et.,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5ed., 2006, p. 569, 19-2C.

15) Clarke, et., *id.*, p. 580, 19-2E6 참조

16) 만취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다가 잡혔다든가 상가를 덮쳐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대법원판결은 유감스럽게도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의 무효를 선고하여 보험질서를 뒤 흔들어 놓았다.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7591판결은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픽업자동차를 운전하다가 60도 길 정도의 커브길에서 과속 및 운전미숙으로 제대로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를 이탈하여 왼쪽에 설치된 하수구를 충격함으로써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에서

- (1) 무면허운전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자살이나 고의적인 자상행위 또는 보험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의 살인이나 상해행위의 비윤리성과는 달라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2) 상법 제659조제2항(현행 제732조의2)과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무면허운전사고면책에 관한 손해보험약관의 규정이 보험사고가 전제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¹⁷⁾ 그리고 대법원 1998.4.28. 선고 98다4330 판결¹⁸⁾도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 가로등을 연쇄 충격함으로써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같은 뜻으로 판시하고 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

17) 양승규, 「보험판례연구」, 삼지원, 2000, 521쪽 참조. 대법원 1996.4.28. 선고 96다4909 판결도 교통상해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18) 양승규, 「보험판례연구」, 삼지원, 2000, 537쪽 이하.

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법원판결은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또는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은 그 상해 자체에 피보험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부분에서는 무효’라고 판시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원이 피보험자보호라는 이념을 앞세워 중대한 교통재해를 유발한 피보험자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선의성, 윤리성에도 벗어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그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폐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대법원판결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보험자가 면책조항을 들어 음주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인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까지 보험금지급을 강제하는 상법 제732조의2의 규정이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수원지법을 통해 낸 위헌제청을 병합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1999.12.23. 결정 98헌가12, 99헌가3, 10, 99헌바33.50.52.62.65(병합)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 . . . 소비자인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 특히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 .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밝혀 합헌을 인정했다.

여기에서 상법 제732조의2의 규정에 대한 해석원리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위헌 여부를 다툰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¹⁹⁾ 다만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보험이나 그 면책약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보험자의 담보위험제외사유로 보는 한 법원이 그 약관을 무효라고 선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약관을 보험자의 책임면제사유로 보는 경우에도 그 사고의 원인이 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자체가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그 신체의 손상이나 사망은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도로교통의 안전과 대형사고의 예방이나 보험사기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3. 보험자의 대응

무면허,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상법 제732조의2의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린 후 금융감독원이 2000년 2월 24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손해보험약관을 개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 학회의 전신인 보험법연구회는 보험감독원장에게 2000년 2월 29일자로 그 부당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약관의 개정을 중지할 것을 건의하고, 보험신보에 광고로 그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 건의서에 밝힌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위반의 정도를 넘어서는 범죄행위이고, 범죄행위를 감행한 자에게 보험보호를 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을 깨뜨리게 된다.

둘째,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보호는 보험제도의 원리를 훼손하여 심히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사보험은 공보험과는 달리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상해보험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행위나 고도의 위험행위는 보험자가 보험보호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²⁰⁾

19) 필자는 1990년 상법개정당시 법무부의 상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상법 제659조제2항(현행 제732조의2)을 삭제할 것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넷째, 인보험에서 고의에 의한 사고만을 면책으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의2가 합헌이라고 해서 상해보험약관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이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상해보험에서의 고의에 관한 해석원리나 담보위험제외이론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이 허용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의 일반 상해보험약관과 자동차상해보험약관(자기신체사고약관)은 하나같이 무면허·음주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례에 벗어나서 우리만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한 피보험자 본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올바른 보험제도의 운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보험감독 당국은 관련 보험약관의 개정을 강행하여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조항을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여야 할 보험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보험사업자에게 잘못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약관의 면책규정을 삭제하여 기본질서를 파괴하여 무면허,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과연 감독당국의 권한에 속하는가?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과 결부시키면 어떨까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오히려 보험감독권의 남용이고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인정되므로(민소 제218조) 음주, 무면허운전자가 운전 중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소송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는 그 면책약관을 무효로 신고한 개별적인 대법원판결에 따라 당연히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러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여(법원조직법 제8조) 같은 결론에 이를 수는 있다. 대법원판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잘못이 있으면 그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감독원이나 보험사업자는 그 잘못된 판례를 그대로 승복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다투어 그 판례의 변경을 촉구하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상법 제732조의2가 합헌이라고 하면서도, ‘무면허,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행위에도 면책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 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4년의 상법(보험법) 개정안에서 개정위원들은 인보험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중의 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자 애썼으나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돈이면 다’라는 금전지상주의가 팽배하여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매몰되어 가고 있다. 보험사기²¹⁾는 물론 무면허, 음주운전사고²²⁾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보험자로서 대응할 대책은 무엇인가?

보험사업자는 이제라도 상해보험약관이나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에 무면허, 음주운전 중의 사고위험은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감독 당국도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교통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뚜렷이 하고, 법원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IV.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보험금감액 조항의 효력

1.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뜻과 보상조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상해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인보험이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자신의 과실로 생긴 사고이거나 가해자의 면책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보호를 하고자 하는 인보험이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21) 2014년도 음주, 무면허운전사고에 의한 보험사기 적발금액 74,235백만원, 전체금액에 대한 구성비는 12.4%에 이르고 적발인원은 19,749명, 구성비는 23.4%에 이르고 있다. 앞의 한국의 손해보험 68, 69쪽에서 인용.

22) 미디어인천신문 2015.8.18. 보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13,390건에 이르고,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86663건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는 1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안전띠를 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도교법 제50조 제1항). 이에 따라 현행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제1항 제5호2)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험금감액조항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사고의 손해액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한 것으로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도 있다.

2. 대법원판결에 대한 시각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²³⁾은 “상법 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보험사고발생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먼저 소개한다.

이 사건은 피보험자 갑이 2009.9.17.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라오던 쏘렌토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그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고이고, 갑은 추돌한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4억원의 보험금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자는 그

23) 이 판결에 대하여는 이성남, “자동차면책약관규정에 대한 내용통제 및 급부조정의 법리에 관한 연구”, 2015년 3월 30일, 한국보험법학회 보험관계연구회자료집 참조.

감액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산정한 후 20%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 . .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그 보험금의 20% 감액을 규정한 것은 상법 7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732조의2와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1심(서울중앙지법 2012.6.1. 선고 2012가단5003190 판결)과 2심(서울중앙지법 2012.11.22. 선고 2012나26441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감액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 갑이 상고하여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되돌려 보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판결(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보험금감액약관은 공제리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감액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그 감액약관을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이므로 그 보험금액의 20-10%를 감액한다는 감액조항은 운전자나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피보험자에게 그로 인하여 확대될 수 있는 손해액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한 손해보상의 조건이지, 이를 면책사유로 풀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객을 싣고 가는 차량이 운행 중 전복된 사고의 경우 승객이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여 피해가 적었다는 보도를 보고 있다. 안전띠를 매지 아니했을 때 그 손해율이 그것을 맨 경우보다 7배가 높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²⁴⁾에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액에서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이고, 이것을 보험자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다는 면책사유로 풀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보면 피보험자 갑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라오던

24)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쏘렌토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그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게 된 사고이고, 갑은 추돌한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4억원의 보험금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이 음주운전면책약관을 무효로 판단하지 않고 보험의 법리에 따라 음주운전 중의 사고를 담보위험제외사유로 인정하였다면 이 사건 피보험자는 전혀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채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감액지급을 규정한 약관의 조항이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데도 감액처리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풀이하는 것도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이 그 교통사고의 원인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그 피해 정도를 높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안전띠를 매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액의 20-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을 쉽게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원심(서울중앙지법)판결을 파기한 대법원판결은 크게 잘못된 판결이고, 그러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도로교통사고의 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보험자의 대응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의 보험금감액조항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손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준수 의무의 하나로 규정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 조건을 정한 것이다. 이를 무효로 선고한 대법원판결은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그로 인하여 확대된 피해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사업자는 그 잘못된 판결에 승복하여 감액약관을 형해화하여서는 안된다. 끝까지 그 감액조항에 따라 보험금지급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보험감독 당국은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음주,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없애도록 한 과거의 전철을 밟아 감액약관조항을 철회하고 그러한 피보험자에게 추가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

란다. 자동차운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은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액의 일정부를 감액한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대법원판결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V. 맺는 말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기중된 손해액에서 20-10%의 감액을 정한 보험금감액조항과 관련된 대법원판결은 하나 같이 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생각한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운전자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 후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자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2012년에 17,621명, 2013년에 17,999명, 2014년에 19,74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²⁵⁾ 이러한 현상은 법원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중의 사고에 대하여 면책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고 관대하게 감싸고 있는 것²⁶⁾도 그 원인의 하나로 든다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험계약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성원을 도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가장 중요한 제도(the most important inventions of the human mind)의 하나이다.²⁷⁾ 이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비록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준공기업(quasi-public)의 성격을 지니고 보험사업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된다.²⁸⁾ 그리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체

25) 손보험회, 한국의 손해보험, 2015, 69쪽에서 인용.

26)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혈중알콜농도 0.13%의 상태에서 무면허, 절취 운전 중 생긴 상해사고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1998.10.20. 98다34997 판결은 절정에 이른 것이다.

27) Patterson, *op.cit.*, p. 3.

28) Lawrence J. Culligan, et., *CORPUS JURIS SECUNDUM* vol. 44. 1998, p.102. 참조.

결한 보험계약이라도 어느 정도 단체적인 구조를 지니고,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선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험계약에서는 언제나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즉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노려 일부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여러가지 형태의 도덕적 위험의 방지에도 힘써야 한다.²⁹⁾ 보험약관에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을 한정하고, 보험금지급을 위한 조건을 더는 것도 보험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보험제도는 위험의 인수와 분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보험을 통해서 세계적인 조직망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원이 보험법의 원리나 보험제도의 특성을 도외시한 판결로서 보험질서를 흔들면 국제적인 보험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운전부적격상태³⁰⁾에서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헤집고 다니는 것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 도로교통의 안전과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에서 이른바 **생명줄**이라고 일컫는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한 것을 어기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계약법의 이념이나 보험원리적으로도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러한 약관을 무효라고 선고한 대법원판결은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하고, 보험자는 그러한 판례에 구애되지 않고 보험의 원리를 살려 보험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로 불행히도 거짓과 위선이 판치고, 사회윤리가 타락하여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을 부인할 수 없다. 보험사기가 꿈틀거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무면허, 음주운전 중에, 또 안전띠를 매지 않고

29) Kenneth S. Abraham,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case and Materials*, 1990, p.4. Insurers attempt to combat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with a variety of devices.

30) Bauer, *a.a.O.* S. 202. 참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를 돕는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암을 키우고,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 할 것이다.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결코 봉이 아니다.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그 삶에 따라다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로 출연한 금액으로 우연한 사고로 고통을 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값진 돈임을 일깨워야 한다.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제구조를 지닌 위험공동체에서 고의적으로 사고위험을 높인 피보험자를 제재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 보험의 법리이다. 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기를 고대한다.

참고문헌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 양승규, 「보험법의 법리」. 삼지원, 2000.
- 양승규, 「보험법연구」, 한국보험법학회, 2000.
- 이성남, “자동차면책약관규정에 대한 내용통제 및 급부조정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법학회 보험판례연구회자료집, 2015년 3월 30일.
- 정찬목, “자동차종합보험 관련 최근분쟁조정사례”, 「손해보험」, 2015. 04
미디어인천신문, 2015.8.18.
- 손해보험협회, 「한국의 손해보험」 (2015)
- Bauer, *Die Kraftfahrversicherung*, 3 Aufl., 1993
- Edwin W. Patterson, *Essentials of Insurance Law*, 2d. 1957
- Kenneth S. Abraham,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case and Materials*, 1990
- Lawrence J. Culligan, et., *CORPUS JURIS SECUNDUM* vol. 44. 1998
-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11ed. 2008
- Malcolm Clarke, et.,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5ed., 2006
- Robert E. Keeton, Alan I. Widiss, *Insurance Law*, 1988
- Wolf/Horn/Lindacher, *AGB-Gesetz Kommentar*, 1984

<Abstract>

Review on Supreme Court's Judgments Nullifying Insurance Clauses Covering Automobile Self-bodily-injury and Proposal for Insurer's Counter-measure

Yang, Seung Kyu

The Road Transportation Act prohibits driving without license and drinking driving and requires to wear safety belt in order to achieve safety of road transportation and reduce number of incidents. Meanwhile, automobile comprehensive insurance policy provides exemption of insurer's liability for self-bodily-injury incident which is incurred by the insured while he drives without license or commits drinking driving, and reduces the insurer's liability by 20% for self-bodily-injury incident which is incurred by the insured while he drives without wearing safety belt.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rendered judgments which nullified the exemption clauses of such unlicensed driving or drinking driving(Case No. 89Daka17591 dated 25 May 1990 & Case No. 98Da4330 dated 28 April 1998). Further, the Supreme Court held in its judgment (Case No. 2012Da204808 dated 4 September 2014) that "According to Articles 732-2, 739 and 663, even if a violation of law was committed by the insured such as driving without safety belt at the time of insured incident, so long as the insured's such violation of law is not considered as an incident caused by the insured's intentional act, such exemption clauses shall be deemed void."

The writer is of the view that the Supreme Court reached wrong conclusion which would impair road transportation safety and instigate insurance crime by nullifying reasonable exemption clauses based on insurance law principle. The Supreme Court judgments are very short-sighted which seemed motivated by frivolous idea of protecting insureds.

Moreover, the insurance authorities (i.e., Insurance Supervision

Services) ordered the insurers to delete such exemption clauses from the insurance policy and to pay the insurance proceeds to the insured who failed to wear safety belt, which is totally shame. It is beyond the limit of the insurer's authorities for the authorities to order the insurers to amend insurance policy or make payment pursuant to the wrong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The insurers shall exercise their best efforts in order to rectify such wrong court judgments, refuse to comply with improper order by the insurance authorities and seek reasonable counter-measure to cope with the current situation.

Key Words : Insurance contract law, unlicensed driving, drunk driving, safety belt, insurance clause, indemnity of insurer